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신고센터로

새로운 시작
新GO!

주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

공인중개사법

1. 무등록 중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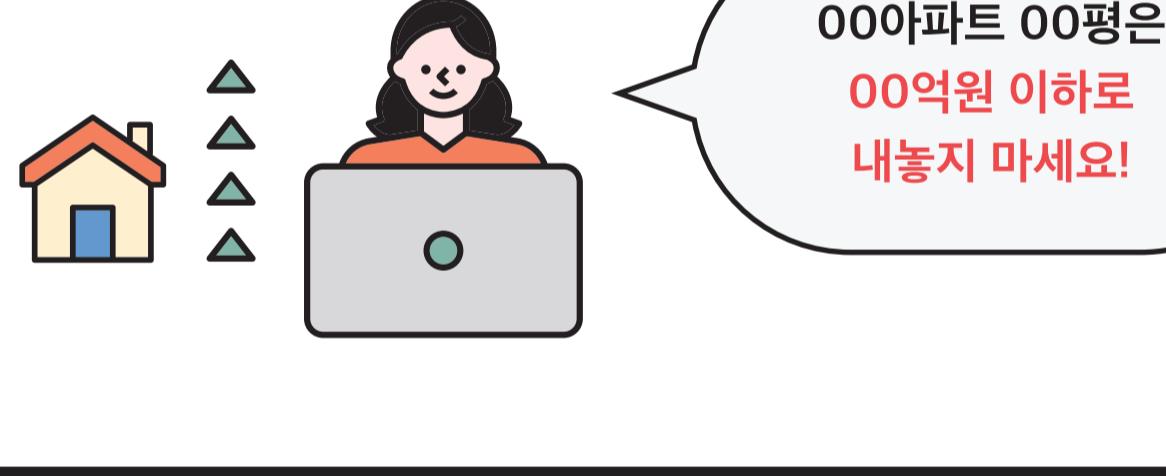
증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증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설등록을 신청한 행위

2. 자격증·등록증 대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또는 증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3. 증개보수 초과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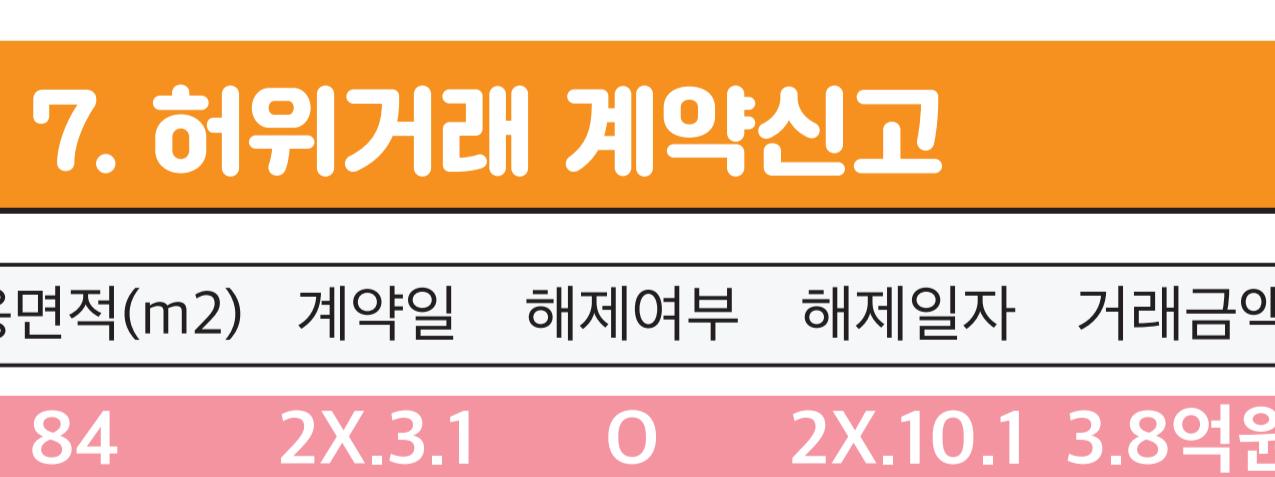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정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컨설팅 비용 등의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증개사의 거짓언행



증개물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증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집값담합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행위

거래신고법

6. 업·다운 계약신고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7. 허위거래 계약신고

전용면적(m2)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일자	거래금액
84	2X.3.1	O	2X.10.1	3.8억원
84	2X.2.1			3.1억원
84	2X.1.1			3.0억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신고방법



홈페이지 접속
(신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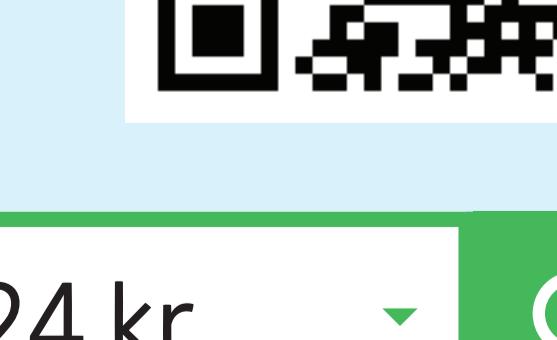
본인 통합인증



신고서 작성



입증자료 첨부



신고서 제출
(접수완료)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접속하셔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클릭**”



콜센터 1644-9782



www.budongsan24.kr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